



아동복지시설 운영

VI-1. 아동복지시설 정의 등	143
VI-2.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145
VI-3. 시설의 운영	166
VI-4. 종사자 관리	186
VI-5. 인건비 및 운영비	195
VI-6. 기능보강 지원	205
VI-7. 시설관리 등(행정처분 및 과태료)	215
VI-8. 미신고시설 관리	221

VI-1 아동복지시설 정의 등

1. 정 의(「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2. 목 적

-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 하기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

3. 근 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50조(아동복지시설 설치), 제51조(휴·폐업),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 제55조(교육훈련), 제56조(제57조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04.1월)
-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VI-2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1. 입·퇴소 등 관리(「아동복지법」 제15조)

가. 입소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해당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특히,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의뢰하면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입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 요보호아동 발생 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의 보호조치 방법, 보호조치시 고려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참조

● 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 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소년법」 제32조제1항6호처분)
-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 자립지원시설

- 지원대상 : 보호종료 아동중 취업(우선), 취업준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24세이하인 자
- 이용아동 생계비 지원 대상 파악 및 지원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이용아동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수급지원이 되도록 적극 안내(지원)
 - 지역내 퇴소아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확대 유도
- 시·군·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시까지의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노력

나. 입소절차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5조)

※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및 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 없이 신고 등 조치
- 지자체의 장(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경우(아동복지법 제15조)
 -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베이스박스 영아 등을 다른 시설에 임시 보호조치 불가 원칙)을 통해 보호할 수 있으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신상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서식 1호)를 제출받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
 -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다만, 보호조치는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적 형태의 보호를 우선으로 추진

-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아동 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6층 실종아동전문센터
아동권리보장원 Tel : 02-6283-0200 / Fax : 02-6283-0698
홈페이지 : www.ncrc.or.kr / e-mail : ncrc@ncrc.or.kr

-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 아동 급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수급자 수만큼 생계비 지급 중지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지체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고,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장은 보호조치를 할때까지 필요하면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보호하게 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결정
- ※ 주의 :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유기아동 등 성본 미창설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 소재지(보호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아동보호 후 즉시 성본 미창설 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절차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를 진행(☞ 자세한 내용은 1.유기아동 성·본 창설을 위한 절차 참조)
- 시설이 없는 시·군·구에서 발생한 아동의 차질 없는 입소를 위해 시·도지사가 배치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각 시·군·구에 지침을 시달하여 추진 (다만, 시·도가 직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배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외)
-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는 임시 보호 가능

다. 타 지역 입소 의뢰에 대한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보호양육 의뢰(전출·입 등)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적극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발생시 아동의 최상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진단하고 아동의 상태, 욕구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담시설 설치 및 직후 보호조치 (* 예시 :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 ※ 전담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시보호시설 보호 및 일시위탁하여 아동에 대한 환경, 건강상태 등을 진단 한 후 보호조치하고 일시보호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연간 정원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타 지역 아동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
 - ※ 특히, 시·군·구는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2조) 취지를 감안 타지역 아동이라는 이유로 관내 시설입소를 제한 및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방지 조치

라. 이탈아동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18세 이전에 정상적인 보호종료(원가정 복귀, 타시설 전원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이탈하여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정기적(최소 연 2회 이상)으로 파악
 - 필요시 지역내 아동복지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한 최상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 아동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 아동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이를 지자체로 연계하는 것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지자체(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해당 내용을 통보

마. 보호 중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시·군·구청장)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변경조치 실시
 -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자립생활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 그 밖에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보호조치 변경은 원가정복귀,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 순으로 조치 엄수(수시점검예정)

바.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

(1) 퇴 소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퇴소 신청서 제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퇴소조치 등) 참조

< 아동복지법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2) 보호기간 연장

-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

- 대학이하의 학교(대학원 제외)에 재학중인 자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훈련중인 자
-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경우](#))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등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19세 미만 아동 중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기간 연장 조치 실시

* [19세미만 아동이 보호종료를 신청한 경우 아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종료조치](#)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위탁 보호연장 예시 참고

(3)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 일시보호시설 : 3개월 이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6개월 이내 반드시 가정복귀가정위탁입양다른 시설 전원 등 조치 실시
- 자립지원시설
 - 24세 이하까지 이용 가능
 - 입소후 보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
 - ※ 시·군·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하는 날까지 보호 가능
 - 자립지원시설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연장 승인 신청(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설장이 보호기간 연장사유 및 향후자립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보호기간 연장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도 무방)

사. 가정복귀 조치 및 사후관리

※ 가정복귀 조치 및 사후관리 관련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참조

(1) 가정복귀 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복귀를 신청(시설에서 아동 직접 귀가는 불가)
-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는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복귀 조치여부 결정
 -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종결심사서, 가정복귀점검표, 아동 가정복귀 의견서(학대아동의 경우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종결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2020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가정 복귀 요건 충족 여부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여부 결정

- 다만, 보호자의 성품·행실이 불량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우려, 심신장애,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또는 감염병 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복귀를 시키지 않음

※ 양육상황점검표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확인(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보호조치한 학대피해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 조치

-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 진행 시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 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를 진행 하고, 관할 시·군·구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통해 가정 복귀 여부 판단

(2) 사후관리(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아동복지법」 제16조의2, ‘20.12.29 개정, ’21.6.30시행)

- 특히, 시·군·구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연령초과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경우 총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 원가정 복귀후 1주일 이내 유선 및 가정방문 실시,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1회 가정방문 필수),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아동이 원가정 복귀 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 친부모·아동상황점검표 활용(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참조)

※ 아동 거주지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아동 관련된 사항을 신거주지 시·군·구로 이첩하여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2. 아동 배치

가. 아동생활시설(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보호치료시설)

- 성별 분리하여 숙소 배정함. 다만 초등학교 미만 남매의 경우 같은 숙소 배치 가능하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남녀 분리

나. 공동생활가정

- 남녀 분리형(성별 분리 보호함. 다만 초등학교 미만 남매의 경우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같은 그룹홈에 배치 가능하나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남녀 분리)
※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남녀 혼합시설의 경우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전까지 연장가능. 이미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에 조속히 분리 보호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분리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그룹홈 시설장이 분리연장을 건의 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가능

3. 아동 인권 보호 및 교육

가. 아동 인권 보호

(1) 학습권 보호

-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은 학교 전학 또는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시설장은 입소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연계, 위탁교육 등 아동에 대한 학습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진정권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
 - 시설의 장은 아동을 최초로 보호하는 때에는 시설보호 아동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
 -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 거주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

- 아동이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
-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
-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
- 시설의 장은 시설 아동이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지원
-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 아동이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
- 시설 종사자 등은 위원회 명의로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거주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의 경우 열람 금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및 시설은 시설내 아동인권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적극 조치

나. 아동학대 및 성범죄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범죄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 * '14.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폐지하고,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 노출 금지
-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청
-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동법 제67조제4항)

다. 아동 교육

(1) 아동 인권 교육

- 아동시설은 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침해받아온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아동의 인권의식 강화를 비롯해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동시설 내에 인권보호 및 실현에 대한 제도 구비
- 아동인권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아동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아동 본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종사자는 아동의 인권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인권교육을 직접 실행하므로 인권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시설 내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체벌, 성학대 등 인권침해상황을 예방 노력
-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권리 침해 시 호소경로 장치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문서화해야 하며, 아동 인권 규정은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전달하여 아동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고, 아동시설내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통보

(2)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별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참조)

※ 아동대상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시 흡연예방 교육 함께 실시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재학\(재원\)증명서로 증빙](#))

- 시설장은 입소아동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시설내 영양사로 하여금 아동대상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실시토록 하되, 아동대상 식단 및 음식의 맛 및 영양 등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실시하여 만족도 제고에 노력
- 시설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교육 실시
- 시설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학대아동, 경계선아동, ADHD 아동, 트라우마 아동, 스트레스 장애 아동, 영유아, 장애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 연령별 특성 및 심리적 이해 교육 확대 추진에 노력

* ADHD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참고 1 아동에 대한 5대 의무교육>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학교 취학 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학교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구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교육 방법		2. 성폭력의 위험 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오용·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법과 예방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중·고등학교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항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5. 항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규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전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 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참고2 : 아동의 4대 기본권 및 아동학대의 유형>

가. 아동의 4대 기본권

- 생존권(Survival Rights)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Protection Rights)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발달권(Development Rights)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 아동 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등이 포함.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판단
- 정서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 정서학대의 경우, 학대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학대, 방임 등 타 학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성학대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성적유희, 성인(음란)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성매매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들이 포함
-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물리적방임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크게 구분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

[아동학대 유형 및 구체적 행위]

학대유형	개념	구체적 행위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임.	• 때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비틀어 꺾어짜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 감금행위 •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하거나 원망적·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아동발달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아동 성학대는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취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성인물을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성인물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성매매나 아동 매매 행위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행위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4. 시설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 일반생계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급비를 시설 회계에 산입 가능(아동 권리과-2252(2019.4.17.)호, 4574(2019.8.30.)호)
 -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함

(1) 아동그룹홈 생계급여 관리 방안

-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적용 가능한 점, 별도의 장부 관리로 아동별 지출금액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 최소화, 합리적 수급비 사용, 읍면동 시설급여점검 애로점 등을 고려
- 해당 아동 그룹홈의 시설정보 시스템 사용 여건, 소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 바람직
- 시설회계로 편입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 과목은 사업비(운영비, 교육비, 기타사업비)로 편성하여 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 가능(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 참조)
- * 다만, 아동 개인별 직접지원(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항목으로 최소 시설생계급여 이상 지출

(2) (시설회계 편입시) 아동그룹홈 아동 급여관리

- 시설회계로 편입되는 경우 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시설 점검시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점검, 읍면동의 반기별 현장점검은 해당 점검으로 대체 가능
- * 시설 담당부서의 점검 결과 부정사용 의심 등 세부 점검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생계급여 담당 부서(읍면동 포함)에 재점검

구분	기존기준	권고기준
① 시설회계산입여부	시설회계불산입	시설회계산입
② 생계급여수령	아동명의통장	아동명의통장
③ 시설통장으로이체	시설명의통장으로이체	시설명의통장으로이체
④ 사용내역관리	개인별 사용내역및영수증관리	시설정보시스템으로 항목별사용내역및영수증관리

● 외국국적 아동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급여 등 관리

- 부모 등의 생계비 사전편취 문제시 기초생계급여 담당부서와 협조(아동권리과-5796호 2019.11.8.)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지침의 「4.급여의 실시 → 4.계좌관리 → 나. 급여 계좌예외」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 미성년아동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그룹홈 입소아동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 양육수당 등 보호아동의 개인 금전관리

- 양육수당 관리지침을 참조하되,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은 아동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위임하여 관리 성격

● 원칙 : 개인금전 관리(시설회계와 별도관리)

- 영유아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개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추후 교육비 등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 단, 시설 입소 시 아동 개인 통장이 없는 경우, 아동 개인 통장 개설 시까지 시설(법인) 명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아동 명의 통장 개설 시 시설 명의 통장으로 기 지급된 양육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

● 회계관리 방식

- 수입 : 아동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 지출 : 아동별 금전출납부 기록·관리(거래 영수증, 기타 지출증빙서류(의류 사진, 프로그램 일지 및 출석부 등) 첨부)

● 지출 용도

-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 단, 아동의 생활 및 서비스 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종사자 인건비(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비, 장비비(아동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시설 제반 운영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등

* 적립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사용 권장, 실제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모 등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자립정착금 시설기부 금지(아동권리과-3792(2019.7.12.)호)
 - 아동에 대한 개인금전 관리 및 합리적 소비 등을 위한 경제교육 실시
 - 아동 명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자립정착금, CDA, 자립수당 등)에 대하여 시설에 기부 금지

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침 참조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2) 지원기간

-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3) 매칭 및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4만원 → 5만원)

다. 후원자 연계 및 후원금 관리

☞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후원금의 관리 참조

- 시설장은 지역사회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 개발에 노력
 - 초록어린이재단에 입·퇴소현황을 월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후원에서 누락방지
 - 신규 입소아동이 후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신속히 송부
 - ☞ 신규 입소아동 자료송부가 늦어 기존 결연아동을 결연, 다중 결연하는 문제 발생

● 비지정 후원금 관리

*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비지정 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참고

-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용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 금지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직업재활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등
- 간접비 : 기타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운영충당 적립금, 환경개 선준비금 등으로 사용 금지

● 지정후원금 관리

-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 금지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 후원금은 제외
- 후원금 통장명의로는 아동 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인감은 시설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 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동임의로 현금 과다지출 방지하고, 특별히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통장 관리
- 후원금이 많이 입금되는 아동은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 퇴소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후원금 사용

- 연간 사용계획에 반영하거나 후원자가 지정 후원금으로 정할 경우 사용 가능

● 행정사항

-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용도(개인부채 상환 등)로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실시

- 시설의 장은 지정후원금을 관리비용에 사용한 때에는 사용내역(서식 3호)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

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 및 치료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 및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방 접종,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
- 특히,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전에 모든 보호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 철저 실시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사업 안내]

- (목적) 심라정사인자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
- (사업기간 및 예산) 단년도 계속사업, [예산 '21년 약 17억원](#)
- (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 개입이 시급한 아동
- (사업주체) [아동권리보장원](#)

구 분	세부 지원내용
아동역량강화	- 맞춤형 아동 치료·재활 프로그램(종합심리검사, 치료프로그램비 지원) - 통합 사례관리 지원 - 아동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지원 및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 실무자간담회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주양육자 상담비 지원
지역사회 역량강화	- 시도별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솔루션 위원회 설치운영
조사연구	- 효과성 평가 및 사례관리 성과 연구 용역(임상분야/사례관리분야)
홍보사업	- 다양한 매체 활용한 홍보 활동 -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행정사항)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는 시설아동이 심리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 또는 관련전문가의 제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아동을 치료재활사업사업에 신청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내의 시설 아동중 ‘아동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해 정사·행동상 문제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심리치료재활’사업에 참여 지도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결정전 일시보호시 가정환경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단, K-CBCL을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합 심리검사(full battery) 시행)를 아동복지시설 심리치료·재활 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가능

마.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을 권고

바.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원’ 지침 참조

-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초·중·고·대학)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 시·도(시·군·구)는 입소때부터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
 - 시설은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
 - 생활자립역량(독립생활) 강화를 위해 공간 활용 가능한 시설은 15세 이상 아동 중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 및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1인실 제공

[참고] 자립기술의 8대 영역

1. 일상생활기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하기 등 기술습득
2. 자기보호기술	•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스트레스 다스리기 등
3.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사회자원 방문조사 및 활용
4. 돈 관리 기술	•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기술습득
5. 사회적 기술	•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습득,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등
6.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 적성검사를 통한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탐색
7. 직장생활기술	• 이력서 작성법, 면접방법, 대처방법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다시 집 떠나기	• 집구하기, 계약, 이사 등의 거주지 마련방법습득

사.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비고
아동·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	• 아동·청소년의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특성 이해 •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과제 해결 중심 접근 • 아동의 학령에 맞는 개별적인 연차적 자립 계획 수립 - 매년 아동의 욕구를 점검하여 수정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 연 1회 이상 • 가족참여 프로그램(ex. 가족캠프 등) 연 1회 이상 실시 •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등 연 1회 이상 실시	
학교와 관계 형성	• 학교 교사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에 참여 - 분기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해 교류한 기록 보유	
지역내 자원 활용	• 지역내 관공서, 민간 자원 등 자원 연계 • 자원봉사 및 후원 기관과 관계 형성성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아. 보호종료 예정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

☞ 자세한 사항은 '자립지침' 참조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연장보호 종료 아동 포함)
 -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자립정착금(지방이양) 아동 1인당 5,000천원 이상 지급
- 지원절차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로 계좌로 입금, 행복e음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급관리'를 통해 아동에게 지급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안내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지급
 - ※ 단,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 공간 마련 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보호종료아동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VI-3

시설의 운영

1.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1. 시설 설치 및 휴·폐업 등 신고

가. 시설의 설치 신고 : 「아동복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아동복지 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군·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시·군·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

나. 시설 폐업·휴업 등의 신고 : 「아동복지법」 제51조,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 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 영 제50조의 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폐업·휴업 시의 조치)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 식중독 사고 및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인 이상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반드시 신고
 - ※ 집단급식소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51조, 제52조, 제88조, 제94조, 제10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아동복지법」 제52조

라. 변경 신고 : 「아동복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 변경(별지 제23호서식)

-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2.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1) 시설의 입지조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참조

-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고,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업소가 있는 부지에 선정 가능
 - 단독 대지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시설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복합상가 내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시설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생활시설은 다음의 기준 추가 적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그룹홈이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신고시설 운영자가 그룹홈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시설의 설비 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 및 2. 시설별 기준 참조

- 공통기준
 - 30인 이상 시설은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모두 구비
 - ※ 거실 : 아동 1명당 6.6m²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30인 미만 시설은 별표2의 제1호나목에 따라 일부 시설을 겸용 또는 생략 가능

● 시설별 기준

구 분	설비기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 시설	• 66m² 이상의 강당 또는 오락실 설치 • 도서실 설치 • 16.5m² 이상의 심리검사·치료실 설치
공동생활가정	• 82.5m² 이상의 주택형 숙소
자립지원시설	•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9.9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정원은 2명 이하
아동상담소	• 사무실 : 16.5m² 이상 • 자료실 또는 대기실 : 16.5m² (30명 이상 시설만 해당)

●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

*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 기준임

- 전용면적 : 82.5m² 이상의 주택형 숙소(시행규칙 별표1: 제2호다목)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음 표의 각 기준에 의함.〔주택법시행규칙〕제2조)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변기의 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아동 5명당 1개 이상(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남녀혼합형의 경우 남녀 각각의 침실을 갖추어야 함

- 유의사항 :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그룹홈의 임차료 납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 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충당계획 등 운영 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담보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담보에 대한 상환 및 이자납부계획 확인 등 운영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

※ 그룹홈의 재정운영계획 및 자원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그룹홈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대출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제외

- 그룹홈 건물 소유시 1년이내에 구입한 경우 계약서 상 금액, 1년이 경과한 경우 공시지가 금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받은 차입원금을 부채비율로 산정
- 그룹홈 건물 임차시 전세금액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사인에게 받은 차입원금을 부채비율로 산정
- 그룹홈 면적, 입지조건, 재정능력, 보호대상아동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 여부 결정

나. 시설 정원 책정

● 아동정원 책정기준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 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공통시설기준>시설의 구조 및 설비>거실 규정의 거실 면적은 아동의 개인적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과 아파트형 구조의 공동생활 공간과 같은 거실을 의미하며 아동의 개인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등은 제외
- 화장실 설치기준에서 변기의 수 산정시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화장실도 포함 가능

● 주요업무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과 실제 사용용도가 일치되도록 시설 또는 건축물대장 정리

※ 참고 : 사례예시

건축물 대장에 아동숙사로 되어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창고로 운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정리

(제1안) 실제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 정원을 감원하여 책정

(제2안) 창고로 운영되는 공간을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아동숙사로 지정하여 현재 정원 유지

-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정리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정원 책정
 -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 각 시설에서 실제용도와 일치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고 신청
- 행정사항
 - 시설 정원을 조정한 경우 시설 정원 변경 보고서(서식 7호)에 현장확인서와 건축물현황도면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호아동 수가 50% 미만인 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부족한 아동시설(일시보호 시설, 보호치료시설) 또는 타 시설로 전환
- 아동일시보호시설 정원외 20% 아동 입소를 한시적으로 허용(아동권리과-987, 2021.2.17.)
 - 즉각 분리제도 시행 이후 수요 증가 대비하여 지역 내 시설 등에서 보호여력이 없을 경우 정원 외 20% 범위 내에서 입소 허용(별도 통보 시까지)

다. 시설의 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3 참조

(1) 공통사항

- 건강관리
 -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급식위생
 -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
 -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
 -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 배제
 -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 관리규정
 -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 장부 등의 비치 : 아동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보육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

- 아동복지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는 거주 불가

● 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

-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

(2) 시설유형별 사항

(가)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

● 입소아동은 학교 전학 또는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시설장은 입소 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연계, 위탁교육 등 아동에 대한 학습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거나 부족한 각 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의 아동 보호조치를 하기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권고사항(2018.5.18.)

- 각 시설별 아동들과 자치회의,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복 및 생활용품 지급 공통 기준 마련 운영

- 임상심리상담원 및 외부 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노력

- 권위적인 통제방법(벌점, 상점 등)을 지양하고 아동들과 자치회의, 직원-아동간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내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지자체 및 외부관계자 등이 참여한 시설운영위원회 등에서 모니터링 필요)
- 부모와의 접견권, 전화통화, 면회, 외출, 외박 등 제한 등 기본적인 권리 박탈 중심 징계제도 개선 및 외부소통 기준 마련
- 과도한 서신검열 지양,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과 교사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아동이 직접 편지 개봉을 하고 교사는 내용물만 확인
- CCTV 활용 목적과 활용 방안, 관리자담당자 접근 제한 및 모니터기록 비치 등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화장실 내 CCTV는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창문만 모니터 하도록 위치 조정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5대 교육’ 외에 필수교육으로 아동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 관리 운영비 권고기준 이상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호목적에 맞는 시설 운영 내실화(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임상심리상담원 반드시 배치)
- * 보육사 및 조리원 등 24시간 돌봄서비스제공 종사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여 지원

(다) 자립지원시설

-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는 시설환경 개선, 취업·상담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단순 숙식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용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추진

라.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 참조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24조(설치 운영 등)
- 설치대상 : 보호아동 전 시설('12.1.26 개정)
- 업무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각 대표에서 2명 초과 금지)

● 위촉방법

- 위원장 : 위원내에서 호선
- 위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 대표(시설에서 보호중인 고등학교 재학아동 또는 그 이상인 자)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 : 3년(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함)

● 운 영 :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

● 행정사항

- 시설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보고
- 시·도는 운영위원회 설치현황을 매년도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서식 6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참조

마. 시설내 운영 장부비치(「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참조

- 아동카드, 예·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관련 증빙철, 비품대장, 그룹홈 운영일지 등
- ※ 지자체는 필수 비치 장부 외 불필요한 서류 비치 간소화 노력 및 시설 지도

바. 시설 안전 관리

(1) 소방·안전 설비 등 강화

- 안전기준 준수 : 「아동복지법」, 「소방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
- 저층구조 시설 설계
 -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시 가급적 3층 이하의 저층 구조 시설 설치 권장

● 영아 배치

- 거동이 곤란한 영아의 경우 가급적 시설의 1층 출입구 근접한 곳에 배치하고, 1층 배치가 어려운 경우 비상탈출 등을 고려하여 용이한 곳에 배치

● 임시대피용품 구비

- 영아 집중된 시설에서는 임시적인 방안으로 종사자 1인이 다수의 영아를 대피시키기 위한 신생아 대피용 조끼 등 구비

* 신생아 대피용 조끼 사용시 유의사항 등 참조

[아동시설의 안전기준 등]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27조 관련)

1. 주요 시설물은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치거나 병든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비상시의 대피경로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7.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27조 관련)

구분	안전기준
1. 아동을 위한 제품	가. 제품의 성분·함량·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사용 적정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연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물	가.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아동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의 돌출 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아동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안전기준
	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아동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디자인하여 아동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놀이시설물 사이에 연결되거나 바닥과 놀이시설물에 45° 이내로 연결된 줄은 아동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사.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인은 각 놀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우고 이를 지켜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대피용 조끼 사용시 행동요령

<착용요령>

- 앞주머니에는 두 명의 아기와 뒷주머니에 한 명의 아기를 위치

앞(2명)	뒤(1명)
	

- 아기들은 따뜻한 담요나 신생아포에 싸아 조끼에 넣음
- 뒷면에 긴 띠가 부착이 되어있어 끈을 앞쪽으로 묶어 앞에 있는 아기들과 뒷자리에 있는 아기가 구조원과 밀착시켜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착용
- 양쪽 옆에 있는 버클을 이용해 구조원의 체격에 따라 조절을 하여 안정감 있는 비상 구조조끼를 착용

<유의사항>

- 일반적 3개월 미만 아동을 대피시키기 위해 제작된 제품으로 사용 가능 아동을 사전 확인
- 신생아에 대한 목보호, 빠짐 방지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상시 인형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훈련
- 최대 3인까지 가능하나 실제 종사자가 부담 할 수 있는 아동수까지만 조끼에 넣어서 대피
-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
- 착용 후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2) 시설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이 되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 책임관**은 분야별(ex 소방, 건축물, 생활안전 등) 필수 안전업무 실무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시설 안전 점검 등 진행
- 안전업무 실무자는 가급적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지정
- 시설장은 시설 종사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 채용시 소방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우대하고, 기존 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자격증 취득 등 독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
- 소방안전 관리자는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계획, 소화기구 등 점검 실시하고, 미흡 사항은 안전관리 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 * 지자체에서는 시설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상시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추진

- 아동복지시설은 화재를 예방하고 불가피한 화재 시 피난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아래와 같은 대책을 상시적으로 시행

1. 방화시설(방화문 등) 및 피난 대피도가 부착된 방화 구획 확보
2. 확보된 피난통로 및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
3. 소화 설비 및 비상경보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4.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 설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5. 보일러 등 화기 시설 공간을 확보
6. 소화기 설치 및 관리
7. 가연성 가스 사용처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적정 상태 유지
8. 시설 내·외부의 전선과 배선 기구를 정기적으로 관리
9. 자동화재탐재 설비, 자동화재 속도설치,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구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안전관리 업무분장 구비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사자 업무분장안을 시설별로 구비하고 평소 관련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토록 조치

● 야간근무 지침 구비

- 대비가 취약한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 야간근무요령 등 지침안 마련하여 시행
- 포함할 내용 : 당직 당일의 안전 취약요인 파악 및 대피경로, 초기대응 방법 확인하고, 이를 시설장(당일 최선임자)에게 보고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 1) 인적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1~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이하 당직자로 칭함).
 - 2) 시간범위 : 야간(21~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 2) 보 고 자 : 당직자
 - 3) 확인방법 : 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은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크).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 4) 확인종결 :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3) 시설 자체 안전점검 강화

- 시설의 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
-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문제점 보완 및 정비 보완 기록부에 기록하여 유지·관리
- 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준을 감안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훈련시 가능한 소방관서와 협력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
- 시설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
 - * 지자체 및 소방관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중,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교육을 받은 증빙자료 및 학교 확인서 등으로 간주함)
- 교육 효과의 제고를 위해 화재 등 재난대비교육은 연 1회 이상은 모의훈련방식으로 실시 하고 시설 자체적인 모의훈련 방식 강화 위한 표준 매뉴얼(안) 마련

※참고자료

< 비상대응 훈련 지침 표준(안) 예시 >	
1. (목적)	본 지침은 비상대응 훈련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 및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훈련을 내실화 하고, 시설 입소자(입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빈도)	훈련은 반기 1회 실시하며, 연간 1회는 야간훈련으로 실시한다. 단, 소방법 등 타법상의 훈련을 실시한 경우 본 지침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참여자)	비상대응 훈련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주관 :	기관장(기관장은 안전관리책임관으로서 전체 지휘) 훈련은 기관장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간 출장, 치료 등 부재인 경우에 최 선임이 대신한다.
2) 훈련참여 :	종사자 및 입소자(입원자)

가) 종사자는 시설의 최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요원(예: 긴급상황 대비위한 간호사 등)을 남기고 훈련당일 종사자 전원 참석한다.

나) 입소자는 당사자의 동의 후에 훈련에 참여토록 하며, 직접 훈련참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참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장이 입소자의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훈련 참여를 제한할 경우에는, 입소자를 대체한 인형·물품 등을 활용하여 실제와 가깝게 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주안점) 기관장은 훈련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실행시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확인·보완한다.

- 1) 다양한 상황 가정(시나리오) : 화재장소(실내, 실외, 주방, 복도 등) 및 화재시기(주간, 야간) 등
- 2) 역할분담 : 개인별 위급시의 임부부여 및 숙지상태
- 3) 최단 피난경로
- 4) 시설 내 비상기구의 사용 : 직접 착용, 사용 실시
- 5) 시설 인근 소방관서 및 의료기관 등 확인
- 6) 대피완료 시간 체크

5. (결과) 훈련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존, 관리, 활용한다.

- 1) 훈련성과 : 시설규모 대비 참여자 및 대피완료 시간 중심 확인
- 2) 결과보고 : 지자체에 보고(지자체는 지도감독시 확인)
- 3) 서류보존 : 2년간 보존(T년도 훈련결과는 T+2년 말까지 보존)

< 아동복지시설 화재 시 피난활동(행동 절차) >

구분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행동절차	
		아동	영유아
최초 화재 발견	경보 전파	• 이용자 - 옥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에게 화재 상황 전파 • 근무자 - 경보설비를 작동하여 건물내 경보 전파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에 화재 상황 통보로 협조 요청	• 근무자 - 화재 경보 건물내 신속히 전파 -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 (자위소방대에 의한 사전 임무 지정) • 자동경보시스템의 확충이 중요
	초기 소화	• 아동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 근무자 : 대응이 가능한 청소년 등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	•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

구분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행동절차	
		아동	영유아
	대피 활동	• 아동 :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 • 근무자 : 대응이 가능한 청소년 등 - 다른 아동의 피난 유도 및 지원 • 창살 등이 설치된 경우 피난로의 다양한 확보로 신속한 대피 방법 확보	• 화재실내의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등으로 대피 • 이용자실에 미끄럼대등의 확충으로 신속하고 즉각적 대처 방안 확충 (고정피난설비의 중요성 인식)
화재 대응	지휘 연락반	• 화재 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 지시/통제 •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소화반	• 소화/진압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수 등) • 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 확산 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 등)	
	대피반	• 아동 :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 •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구조대, 승강기피난기, 미끄럼대, 완강기	• 이용자를 보조하여 대피 활동 실시 •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 구조대, 승강기피난기, 미끄럼대 등
		• 피난기구(구조대) 설치 후 이용자 피난 유도 • 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이용자의 대피 유도 • 피난기구의 설치 및 운용은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를 설치 후 운용	
	구조반	• 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	• 이용자 대피 완료 시까지 구조반의 인원은 최소로 운용하고 이용자의 대피활동 지원
		• 구조/구급장비 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 • 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분류, 의료기관 도착시 지원 활동	
	비고	• 세부내용은 화재 대응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 • 소방대 도착 시 자위보상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 야간 등의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자 중 자위소방대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은 위험이 적은 보조임무 위주로 편성하여 임무를 수행	

공동생활가정(소규모 생활시설) 화재시 피난활동(행동절차)

공동생활가정(소규모 생활시설) 화재시 피난활동(행동절차)

구분		이용자의 유형에 따른 행동절차	
		아동(자력대피 가능)	영유아(자력대비 불가능)
최초 화재 발견	경보 전파	• 이용자 - 옥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 에게 화재 상황 전파 - 119에 화재 신고 • 근무자 - 경보설비를 작동하여 건물내 경보 전파 - 119에 화재 신고	• 근무자 - 건물내 화재경보 전파 (옥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 -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 - 119에 화재신고
		• 경보전파 가능한 이용자를 선정, 초기경보가 가능토록 교육 및 임무를 부여 • 경보전파는 관할소방서(119)에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경보전파는 소방서의 경보 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움 요청	
	초기 소화	• 이용자 : 투척용소화기 등을 이용 •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	• 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
	대피 활동	• 이용자 :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 • 근무자 : 이용자의 피난 유도 • 피난층 등 대피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피난을 유도 • 이용자가 자력에 의해 대피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근무자는 자력으로 대 피가 불가능한 이용자부터 대피를 유도	• 근무자 : 화재실내의 이용자를 우선적 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 - 휠체어 직접이동 또는 보조인의 도움 등
화재 대응	소화 반 / 대피 반	• 소방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소화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사용) • 초기 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실의 문을 폐쇄하고,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대피 • 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 인계(화재 장소, 미대피자 현황, 환자 발생 여부 등) • 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상구 등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이격시키고 소방대의 도움을 기다림 •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통제를 받아 대피 및 구조활동 실시(소방대 도착 후에는 구급활동 위주의 임무를 수행토록 함)	
비고		• 세부내용은 화재 대응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 • 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4)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 * 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58조제1항)
-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가입 원칙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

(5) 공기청정기 관리

- 시설장은 다음 사항을 참고, 공기청정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관리

내용	비 고
<관리자 지정> • 시설에서 사용 중인 각 공기청정기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사고 및 화재위험성을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공기청정기에 관리자에 표찰을 부착(1명 이상)
<공기청정기 관리> •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기정청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하여 청결하게 유지 사용(최소 1개월이내) → 내·외관 오염 및 청결 상태(먼지제거 등), 필터 청소, 전기 및 화재 안전사고 위험성 등	☞ 점검표를 공기청정기에 부착하고, 점검일자, 점검자, 주요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표기할 것(별도 관리대장으로 작성도 무방)
• 1년에 1회 이상 전문가 등을 통한 진단 후 필터 교체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 사용 → 필터, 공기청정기 기능, 전기감전 위험, 기타 안전성 등	☞ 공기청정기 구입 회사 (서비스 센터) 또는 전문가 등을 통하여 필터 교체 필요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 미사용시 전원(콘센트) 분리 및 화재 위험 등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노력	

사. 시설 지도·점검의 내실화 및 행정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법인) 지도·점검시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 예방 등 입소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 시설아동 인권강화를 위하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여부 점검

VI-4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가. 종사자 자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5 참조)

- ※ 「아동복지법」 별표15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은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졸업예정자, 자격증취득 예정자 등의 경우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최종시험 예정일까지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함(아동 권리와-2696(2019.5.13.)호)

- 주요 내용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복지 사업에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 종전 규정('12.8.4 이전)에 의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은 '18.8.31까지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요건을 반드시 구비(2급 이상 자격을 미취득하거나 2급 자격 취득후 경력요건 3년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18.9.1부터 시설장 자격 상실)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 복지 사업에 1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별표 15 참조)

- 종사자 자격기준 유의사항 안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신청주의)

-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등(별표 15 참조)

- ※ 종전 규정('12.8.4 이전)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는 '18.8.31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3급 이상 자격 미취득시 '18.9.1부터 보육사 자격 상실)

- 종전 규정('12.8.4 이전)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는 해당 직종 적용시기 유예기간에 한하여 타 아동복지시설 전직 근무 가능
 (예시 1) 소망 아동양육시설 시 설 장 → 희망 아동양육시설 시 설 장('18.8.31까지 가능)
 (예시 2) 미래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 → 소망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16.8.31까지 가능)
 (예시 3) 소망 아동양육시설 보 육 사 → 희망 아동양육시설 보 육 사('18.8.31까지 가능)
- 개정 전·후 종사자 자격 비교표(상세 자격기준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2 참조)

직 종	현 행	개 정	적용시기	
			기존 종사자	신규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8.9.1	'12.8.5
보육사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18.9.1	'12.8.5
임상심리 상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16.7.1

※ 종전 규정('12.8.4 이전)의 자격기준으로 근무중인 종사자는 경과조치 기간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종사자 배치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참조

직 종 별	법 정 기 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4참조)
• 시설장	• 시설당1명
• 사무국장	•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 상담지도원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필요인원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 1명, 아동 10명 이상~30명 미만 - 2명, 아동 30명 이상 - 3명
• 임상심리상담원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 보육사	•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직 종 별	법 정 기 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4참조)
• 생활복지사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시 1명 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 10명 이상 전용시설은 필요인원 • 지역아동센터는 30명 이상 2명(50명 초과시 1명 추가), 10명 이상 1명
• 간호사(간호조무사)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상담소 30명 이상 1명
• 직업훈련교사	• 양육, 보호치료 시설은 필요인원
• 조리원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은 10명 이상 1명 (30명 초과시 1명추가) ex) 아동 31명부터 조리원 2명 배치
• 위생원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안전관리원	•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영양사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지역아동센터는 50명 이상 1명
• 사무원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10명 이상 1명 • 자립, 상담소,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인원

● 보육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라 교대인원을 고려하여 배치

연령별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아동 2명당 1인
3~6세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아동 7명당 1인

※ 보육사 배치 예시

3~6세 아동의 경우 5명당 1명의 보육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경우 1명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면 법정기준 미충족

연령	아동 수	보육사 수	2교대시	3교대시
0~2세	3명	2명	4명	6명
3~6세	6명~10명	2명	4명	6명
7세 이상	8~14명	2명	4명	6명

- 지자체 장은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도 아동 2명당 1명의 종사자 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

● 종사자 배치시 고려사항

- 아동의 연령 변동, 아동 감소 등에 따라 보육사 필요 인원이 단기간 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시설과 협의하여 보육사 채용
- 일시적인 아동의 증감에 대한 종사자의 배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후 아동의 변화를 감안하여 배치 가능
- 종사자 1인당 보호아동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보육사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
- 보호 중 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하여 자립전담요원 비치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종별 주요 종사자 배치표에 따라 법정기준 종사자를 배치하되,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보육사, 조리원 등)등에 대해서는 주52시간의 개정된「근로기준법령」(사회서비스특례업종 폐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참고 내용 >

-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
-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 다만,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또한,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동법 제57조제1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채용이 확정되고 최종 임용되기 전 성범죄 경력조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
-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 성범죄경력 조회는 신규 취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포함됨에 유의하고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나 취업예정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조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종사자 근로 환경 및 교육 등

가. 종사자 근로환경 등

- 종사자 보호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아동 감소에 따라 종사자가 퇴직하여야 할 경우 인근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 교대 근무자 추가배치 시설은 반드시 근무표를 작성하고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표 작성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준수

- 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참조)
 -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철저히 이행
 - 연·월차 유급휴가 및 여성보건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취업규칙 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점검

나. 종사자 인권 보호

- 종사자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무 수행 가능

☞ 사례예시

- 본연의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보육사가 보호아동이 등교 후 하교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 영양사가 식단을 짜거나 영양관리 업무 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건강관리 업무 외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등

- 시·도, 시·군·구는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

*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시설 생활자의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 등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발생

- (이용자 안내 및 교육)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서비스의 범위를 고지하고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서비스 등을 요구는 거부 할 수 있다는 안내(안내문 대체 가능) 또는 교육 실시
- (교육실시, 고충 창구 마련) 종사자가 효과적으로 폭력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리플렛·홍보영상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자체 내에 시설 종사자 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 *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예방 매뉴얼 참조

- 종사자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 :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7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 * ex)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가 아동복지시설의 근무지를 점거하거나 종사자에게 폭언, 위협하는 경우 등
- 아동의 부당한 요구, 폭언,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다.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참조)

- '12.8.5부터 시설 안에서는 보호 아동 및 종사자 외에는 거주 불가
 -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12.8.4이전) 시설 안에서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은 '18.8.6까지 시설 밖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관리 철저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적용과 관련, 아동복지정책과-4863(2018.81)호 참조)

라. 종사자 교육

(1)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아동복지 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이해 및 아동 특성별 사례 전문교육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 이해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필요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 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가능
 - 교육훈련 여비 등을 사업 예산에 확보하여 교육·훈련에 차질 없도록 지도
-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 가능)

- 교육내용 :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아동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 학대 예방, 아동권리교육, ADHD 약물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자체는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 지원

ADHD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 내용
■ (진료사유)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에 따른 의사(전문가)의 권고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사 등으로 부터의 지속적 통보, 시설내에서 지속적인 산만·불안·불면증 등 * 아이의 이상행동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진료 금지 ■ (진료시) 의사 진료시에는 아동이 직접 의사와 상담하고 의사의 진단 결과를 설명 들을 수 있도록 조치 * 종사자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과장이나 허위로 진술 금지 ■ (약물 복용)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복용 거부시 체벌 등 아동학대 금지 ■ (약물 관리) 보육사 및 간호사 등 종사자가 관리하고, 약물 보관은 아동에게 노출되는 곳에 보관 금지 ■ 아동 약물 복용일지 작성할 것(진단일, 질병명, 투약방법, 투약횟수, 투약기간, 일자별 투약내용 등)

(2) 회계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처리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사소한 기재상의 오류 또는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관련 회계교육 철저
- 개인운영시설의 경우에도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 재무회계지침」에 의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시 적극 참여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안내 >>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정보화를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웹 기반의 사회복지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운영 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 행정업무관리
 -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생활인 및 이용자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일지 관리 등
- 통합고객관리
 - 고객(후원자, 봉사자)관리, 후원금 관리, 자원봉사 관리
- 시·도/시·군·구(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연계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종사자 보고 예·결산보고 등의 보고 및 신청
 - 시·도/시·군·구 공지사항, 질의 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 사회복지시설 자원정보 상시연계

라. 사용 대상 시설

- 사회복지법인
-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舊개인운영신고시설)>

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관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해 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서비스 이력을 연계
-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정보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자원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입소자 보고 등 각종 신청·보고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바.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VI-5

인건비 및 운영비

1.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가. 종사자 인건비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상한 연령까지만 정부(지자체)보조금 인건비를 지원

- 지급상한

- 시설장 : 65세 (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아동공동생활가정도 동일 적용](#)

- 종사자 : 60세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일 : 종사자의 출생일이 1월에서 6월사이인 경우 지급 상한일자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지급 상한일자 12월 31일
 - 예시1) 설립자(2002.1.1 현재 재직)인 시설장 생년월일이 1950.5.1 인 경우
지급 상한일 : 2020.6.30
 - 예시2)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2002.1.2이후 재직)인 시설장 생년월일이 1955.8.16. 인 경우
지급 상한일 : 2020.12.31.
 - 예시3) 보육사 생년월일이 1960.4.13 인 경우 지급 상한일 : 2020.6.30

※ 상한 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 가능

※ (시설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참조

(2) 인건비 지원 기준

(가) 봉급 및 수당 등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지원

* 간호조무사의 생활지도원 직위 분류는 “2018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8년 2월 28일 이전 채용자는 기존 직위급으로 유지 가능(과장급은 과장, 생활지도원은 생활지도원으로 유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법정배치 인원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 ※ 임상심리상담원 배치기준 적용 시설에는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위해 필수 배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14))
-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정원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고 인건비 지원(아동권리과-987, 2021.2.17.)

(나) 시간외근로수당 지원권고 기준

- 정규 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
 - ※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원 기준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준수

(다) 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등 관련

- 퇴직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라) 퇴직급여 ※ 아동공동생활가정도 동일 적용

- 퇴직급여는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법제처해석 14-0489 2014.8.14.)호
 - 민간·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과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닌 자로 간주하여 지급 불가
 - 단, 퇴직급여 제도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주의사항

- 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② 근로자 퇴직급여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 집행권 등을 갖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급여 지급 불가함을 참작하여 운영비를 보조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

(마) 보육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및 지원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보육사, 조리원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사회서비스특별업종 폐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참고 내용>

-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
- ※ 300인 이상 : '18.7.1(특별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 종사자 법정 미배치로 인하여 감사지적 사례 및 행정처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예산 확보
 - 아동양육시설 뿐 아니라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보육사가 배치되는 곳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중단 가능

☞ 사례예시

- 보육사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보육사에게 본연의 업무를 담당케 하지 않아 다른 보육사 1인이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등

- 종사자 직종별 지원기준에 없는 직책 임명시 시설 자부담으로 운영
 - 다만,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별도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시설장의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능, 장기입원, 타 영리업무 종사 등으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출장 복명으로 시설장 인건비 일부(근무일수 고려) 또는 전부 지급중단 가능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적극 동참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해 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추진하며, 대체인력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지원

- 신규 채용(2020년 4월 이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권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의 증빙자료(소견서 포함)를 요청 및 검토

1.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유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2.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아님” 문구 포함)

* 마약 중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자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가정위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조회동의서(서식3의1호)을 준용)하여 확인 및 검토

나.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 원 칙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 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집행의 자율성 부여
 - 예산편성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의 항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시설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3세 미만 아동 다수보호시설(의료비 등), 보호치료시설(보호선도활동 등) 자립지원 시설(취업활동 등)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
- ※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추가 지원 가능

< 참 고 >

- ①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 ②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 ③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

- 생계급여 및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관리지침' 참조

-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보장시설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 부가급여(관리운영비) 권고기준

● **기본운영비 : 월 62만원/개소** (지자체 필요시 추가 별도 운영비 지원 가능)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정액 지원하되 실제 지출비용 등을 반영하여 상향 지원 가능

● 아동 개인별 지원액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설	자립지원 시설	일시보호 시설
135,580	214,460	88,130	214,460

※ 일시보호시설은 보호치료시설 기준으로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정원 외 아동을 보호중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외 보호아동을 포함하여 지원(아동 권리과-987, 2021.2.17.)

다. 아동급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급식비(시설 생계비 1식당 단가) 이외의 부족분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준까지 추가 지원

● 시·군·구별로 지역 내 푸드뱅크, 로컬 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여 식자재, 부식 등 우선 지원

라. 집행 및 사후관리

● 집행기관(시설)은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내역별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 증빙자료를 비치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연1회 이상 점검(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포함)

2. 공동생활가정

가.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학대피해아동 그룹홈(쉼터) 제외)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연도말,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설치수	332	397	416	460	489	480	476	480	510	533	558	578
예 산 (인건비, 운영비 등)	3,737	4,491	5,469	5,775	6,913	7,357	7,407	8,623	10,708	12,308	14,108	15,632

(1) 신규지원 시설

- 신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그룹홈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 중앙차원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로 대체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별 해당 연도 확정 예산 내에서 가용한 예산(인건비, 운영비)으로 지원 가능
-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보호아동이 소규모(2명이내)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2)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 등

- 불가피한 사정,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보조금 계속 지원여부 결정
 - 해당 시설이 현재 위치에 존속 필요성
 - 종사자의 변동 및 고용승계

- 보호아동의 학업, 가정 환경 등으로 기존 시설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성
- 보호아동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 가능

(3)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의 시설

-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하여 일시정지 가능
- 그룹홈 평가결과 최하등급(D) 이하 시설, 평가거부 시설은 보조금 지원 제외
-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 평가결과 제외시설은 신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 개인적 사정 등으로 휴지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에 준하여 지원여부 판단
- 2020.7월 이후 개인 또는 영리주체(단체 또는 법인) 설치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제외
 - 지원가능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대표자가 본인이 설치·신고한 시설에서 시설장 이외에 보육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해당 설치자 (대표자)의 인건비 등 제비용 지출 불가(2020.7월 이후)

나.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 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에서 별도 지원 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가능

〈 입소 아동별 지원 기준(인건비, 운영비) 〉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0인
전액	전액	전액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미지원

* 단, 지원시설중 아동 퇴소 등으로 입소아동 0명 발생시설은 이후 1개월까지만 지원
(예시 : 3월에 0명된 경우(발생일은 상관없음) 4월까지만 보조금 지원)

* 0~2세, ADHD, 경계선지능 아동 등 중에서 지자체 장의 결정으로 2인으로 산정 가능

다. 인건비

(1) 지원단가 : [28,928천원\(인. 연간\)](#)

(2) 집행기준

- 시설에 교부하는 인건비 총액에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및 종사자 퇴직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인원수에 맞게 배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금 및 4대보험 등을 보육사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 신규채용(2020. 4월 이후)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마약,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의 증빙자료\(소견서 포함\)를 요청 및 검토](#)
 - 1.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유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2.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아님” 문구 포함\)](#)
 - * [마약 중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자](#)
 -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가정위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정보 조회 동의서\(서식3의1호\)을 준용](#))하여 확인
- 법인전입금이나 외부후원금 활용
 - 시설장·보육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 초과운영수당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력 이외의 추가인력 고용 가능
 - * 인건비 지급상한선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해당 직위, 해당호봉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 가능.
- 4대보험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 가능
- 연장근로수당(시설장* 및 보육사) :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가능하며,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준용
 - *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직급·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시설(대표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종사자(시설장, 보육사)의 경우 준수사항
 - 상근근무(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기준, 종사자 근무연수 등을 고려한 차등지급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라. 운영비

- 지원단가 : [336천원/개소. 월](#)
- 집행기준
 - 정부지원 관리운영비로 아동양육을 위한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부족할 경우 아동 생계비로도 사용 가능(아동권리과 4574(2019.8.30.)호 참조)
 - 보조금으로는 협의회비 납부 불가(비지정후원금은 가능,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 국고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 추가 지원 가능

마. 행정사항

(1) 예산 및 결산

-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시설장은 매월 지출 내역 작성
 -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 등을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시설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시·도 및 시·군·구청장은 연1회 이상 점검(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포함)

(2) 홍보실적 등의 보고

- 시·도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서식 1호 참조) 및 홍보실적 반기별 보건복지부에 보고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
 - 시·도는 매년 상·하반기 보고시 공동생활가정 지원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서식 별도 없음)

(3)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3월 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

※ 자자체의 평가가 완료된 신규지원 시설은 즉시 보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 확인

(4) 시도내 지원시설 폐지(집행잔액제외)에 따라 불용 예산 발생이 예상될 경우 복지부에 신규 설치 시설 지원 여부 승인 요청

VI-6

기능보강 지원

1. 사업의 종류

- 시설 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2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신청기한 : 매월 20일까지
※ 3월에 국고보조금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2월 20일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제출서식 : 서식 9, 10, 11, 12, 12-1, 12-2, 12-3

나. 202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점검 및 2020년 사업비 정산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21년도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보고(중간정산) : 2021년 7월말까지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2020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 2021년 2월말까지

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 : 3월 30일까지

● 시설수요 산정

- 시·도(시·군·구)별로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과다 또는 부족 등을 충분히 판단·검토한 후 보호인원(현원)에 필요한 적정 규모로 산정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개·보수, 개축 대상 시설(건물)을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되, 아동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최근(2~3년 이내)에 개·보수한 시설(건물)은 개축 대상에서 제외
- 집단시설을 최소화 하고 가정위탁, 입양 등 아동에게 최상의 환경제공을 위해 가급적 아동 양육시설의 신·증축 기능보강지원에서 제외하고 개축 및 개보수 형태로 지원하되,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1인실 제공 적극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역할 강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2021. 3. 30.)으로 일시보호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등 적극 추진

● 국고보조율 : 50%

● 사업신청 경로 : 사업자(법인)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라.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2021년 9월 10일까지 보조금 예산(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2021년 12월 20일까지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 통지(확정내시)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확정통보 내역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 방침

- 국고보조금 내시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행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광역시·도 단위의 시설기능보강 수요 등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증개축시 입소아동 감소추세 및 현원을 고려, 정원을 감축하여 설계에 반영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사택)을 기능보강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비 반납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되, 반납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 사업비가 시급한 시설에 사용하도록 조치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 착수시에 보도자료를 반드시 배포하고, 언론 게재 실적을 즉시 보고
 - 보도자료는 재원(복권기금), 사업량, 지원금액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 완료 후 아래 이미지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기능보강 지원 공간 앞에 부착하도록 조치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이미지 예시]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전에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불용되지 않고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 시설 운영이 저조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부족한 아동시설(일시보호시설 또는 보호 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및 지원 실시

4. 사업신청기준

가. 개축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 대상시설이나,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우선 신청
- 지원 단가 : 1,365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부담 과다 발생 및 시설(법인) 형편 등 자부담이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 검토가능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개축의 경우 공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비를 1분기 이내에 배정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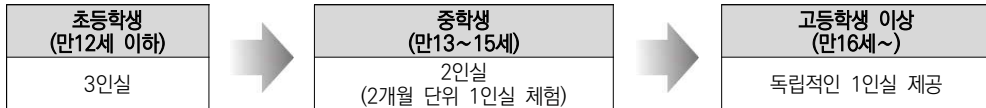
나. 개보수

- 지원 단가 : 682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 면적단가로 지원할 수 없는 창호 교체, 급배관 교체, 전기·소방공사 지원 등은 전문가의 공사 견적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지원
- 소방설비 구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일 '12.2.5)에 따라 건축이 완료('12.2.4 이전)된 아동복지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14.2.4까지 설치 의무화
 - 지원단가 :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67천원 이내

● 자립체험공간 조성

- 기존의 유휴공간 또는 숙사를 ‘일상생활 체험공간’ 조성에 필요한 경비 우선지원

※ 침실, 거실, 욕실, 주방 등 원룸 형태의 체험공간으로 초·중은 체험, 고등학생 이상은 1인 제공



※ 자립체험공간 조성 시설에 운영 매뉴얼, 교육 등 실시 예정

● 일시보호시설로 기능전환

- 기존의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기능전환 시 필요한 경비 우선 지원

* 양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동일 양육시설 내 유휴공간(건물)을 활용하여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보호 아동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기자재(장비) 구입비 지원

- 시설의 아동 양육, 자립 교육, 자립체험공간 조성(냉장고, 세탁기 등) 등에 필요한 장비
- 사업의 주공정율 80% 이상 시설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 단가 :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

5. 사업추진 세부내용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 시·도지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2) 사업 계획서 필수 내용

● 시설 개축 및 개보수

- 사업 계획서에는 시설 설치 장소(이전 시설의 경우 시설부지 확보 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부대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
-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하되 반드시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 의견서(서식 13호)를 첨부(보건복지부 제출 불요)
※ 국고보조금은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제출은 생략
- 시설 개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 검토 및 첨부

●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 사업계획서는 아동양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사용용도 등을 포함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서류

- 시·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서식 14호)”를 작성한 후 이상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9, 10, 11, 12, 12-1, 12-2, 12-3호)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 의견서, 신청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사항,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4)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 확보 내용을 검토(부지매입비 제외 등)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나. 설계 및 공사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 시설보강사업을 위한 시공업체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 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노인·장애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반드시 반영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

(2) 장비보강사업

-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단가 책정
 - 기능보강 사업의 사업 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수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
- 예산 집행
 -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 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 수행자가 소요 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금금, 중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
- 이월 승인
 -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착수하여 완공하도록 지도(단, 2개년도 사업 제외)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이월을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 필요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 보고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공기 연장(시·군·구 승인사항)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 사업
 -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승인(시·도지사)을 받아 동일한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지 변경

라. 국고보조금 수행실적 보고

●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제출기한 : 2021년 2월말까지
- 2020년도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는 2020년도 최종 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
- 2020년도 정산결과 불용액이 많은 시·도는 2021년도 중간정산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불용액 발생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2021년도 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중간정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제출기한 : 2021년 분기별 보고
 - * 1분기 정산결과(4월 말까지), 2분기 정산결과(7월 말까지), 3분기 정산결과(10월 말까지), 10월부터는 매월 보고
- 대상예산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2021년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적 참고 예정
 - *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5조(보조사업의 선정기준)
- 9월말 기준 실집행 실적이 80%미만인 시도는 익년도 기능보강사업 미반영 검토

6.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의 조정·검토, 공사집행,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의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철저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시설의 일부를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타시설로 전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시·도는 기능보강사업 수행자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사택)의 개축,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및 사후 확인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공업체 선정 지연 등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시설 기능보강 유의 및 준수 사항

가. 보조사업계획(설계, 공사 등)의 변경사항 처리 부적정 방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국고보조 사업계획의 변경은 장관의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임의 결정
- 중앙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임의 이월하여 예산을 집행 금지(시도지사 위임사항 제외)
- 낙찰 차액 발생 시 변경 승인 없이 목적 외 공사 실시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시·군·구와 충분한 협의(승인) 및 시·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체 집행

나. 입찰 및 계약 방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다. 산출내역서 및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 감독 철저

-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재사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과다집행
- 설계내역서와 다른 시공(미시공 또는 공사누락)

라.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및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

마.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 기본재산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불법처분
- 건물 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 지원으로 형성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회가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사례
- 금융재산인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거나, 이사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인출 및 유용사례 빈발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을 빌려서 예치시킨 후 설립 이후 인출
- 재산취득에 따른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 법인이 매수, 후원 등 재산 취득시에는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사례 빈발
- 법인의 재산 증감시에는 정관변경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 관리하는 사례

VI-7

시설관리 등(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 시설의 지도·점검 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법인) 지도·점검시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설내 성범죄 및 학대 예방 등 입소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 시설아동 인권강화를 위하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
-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여부 점검
- 종사자 채용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 실시여부 및 위법사항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감독 실시
- 최근 전기·가스·소방 등 각종 위험물 및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일상의 사고발생위험 예방 및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수시 지도점검 철저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 화재,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점검은 시설 자체점검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가 직접 확인 점검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나. 보조금 집행관련 불법수령·횡령 감독

● 아동 등 생활인원 허위신고

- 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 후 편취

● 종사자 인건비 과다 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임의 사용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미지급 또는 경비로 사용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년 10만원(1인) 내외

● 회계관련 서류 조작

- 주·부식비, 기자재 구입비 등 허위영수증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정산
- 후원물품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조작

<참고 : ADHD 약물복용 실태 및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안)>

점 검 사 항	
1.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ADHD 진료를 받게 된 사유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1.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에서 ADHD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연락(해당 시설의 건강검진, 선생님의 통보 등) 3. 시설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 등으로 인한 진료의뢰 4. 기타사유() * 아이의 이상행동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진료를 받게 했을 경우 아동학대 의심
2. 아동이 ADHD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진료과정이 적절 했는지 확인한다.	1. 아동이 직접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의사선생님의 진단 결과 설명을 들었는지? 2. 아동이 동행을 했지만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 졌는지? 3. (아동 미동행)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 졌는지? * 의료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시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
3. 시설내에서 아동의 ADHD 약물복용 과정을 확인한다.	1. 아동이 ADHD 약물 복용을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하였는지?(아동의 처방내역 사전확인) 2. 아동이 ADHD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경우 체벌 등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있었는지? * 고의로 혹은 반복해서 처방내역에 맞지 않게 복용시키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4. 시설내에서 ADHD 약물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1. ADHD 약물관리는 누가하는지?(해당 아동, 보육사, 간호사 등 기타 종사자)

점 검 사 항	
	2. ADHD 약물은 어디에 보관하는지?(약품보관함 또는 냉장고 옆 등 아동에게 노출된 장소) 3. 약물복용 일지 작성 여부(별도 기록관리 또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5. 아동 건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애아동 및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걱정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 질병 발생 시 즉각적으로 진료 및 치료가 제공되는지
	아동의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필수 예방접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6. 아동 훈육관련	
	아동이 잘못했을 경우, 체벌을 대체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
	• 잔혹하고 굴욕적인 훈육방식 지양 (고통을 유발하는 음식 강요, 장시간 동안 계단에 서있거나 엎드려뻥쳐 등)
7. 체벌 관련	
	체벌을 행하고 있거나, 체벌이 없더라도 감금, 음식 미제공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8. 종사자 언행 관련	
	종사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차별, 협박 또는 위협을 하는 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9. 종사자 또는 외부인(자원봉사자 등) 학대 관련	
	종사자 또는 외부인(자원봉사자 등)에 의하여 학대(신체, 정서, 성, 방임)가 행하여진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가확인사항 - 점검의견에 필수 기록] - 발생시기, 피해보고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 시설종사자에 의한 목인 여부 -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신고, 접근 제한 등)가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상담, 치료 등)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0. 학대 신고절차 인지 여부	
	종사자가 아동학대 신고절차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신고전화 112)
11. 아동 및 종사자 인권 교육 관련	
	아동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여부 확인
12.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시설종사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교육 관련 서류 확인(이수증, 계획 및 결과보고 관련)

다. 행정처분

● 행정처분의 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별표16 참조

● 유의사항

- 아동에게 행하는 경미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방임 등이 모두 아동 학대 범주에 포함되므로 종사자는 아동 양육시 각별히 주의 요망
-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받을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분 적용

- 「아동복지법」 제33조(정의)제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법 제56조	시설폐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항제2호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폐쇄		
2)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이내 사업정지	3개월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3)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 외의 경우		1개월이내 사업정지	2개월이내 사업정지	3개월이내 사업정지
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7일이내 사업정지	15일이내 사업정지	1개월이내 사업정지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5호	6개월이내 사업정지	시설폐쇄	
바.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6호	시설폐쇄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6개월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라. 과태료 부과기준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별표17 참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VI-8

미신고시설 관리

1. 기본 방향

- 2006년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방안(아동복지팀-648. '06.2.23)의 기본방향, 행정처분 절차, 일정 등에 따라 추진하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 미신고시설에 대해 최대한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부득이 행정처분시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2. 시설 관리

가. 신고 유도

- 생활아동 7인 이하의 가정처럼 생활하는 소규모 미신고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분류, 신고 유도
 - ※ 생활아동 7인 이하의 시설은 가능한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분류하지 않음
- 다만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 신고하기도 곤란한 경우의 4인이하의 시설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복귀 및 타 시설로 전원 조치
 - ※ 당장 조치가 곤란 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계속 사후관리·감독하여 아동 원가정복귀 및 타 시설로 전원 조치

나. 상시 관리

- '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 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시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 강화

<중점 관리대상가구>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 미신고시설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조사결과 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미신고시설등 불법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3. 아동 보호

가. 아동 실태 파악

● 미신고시설 생활아동 전·출입 현황 및 명단 관리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제6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불가(제7조)
- 신고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와 아동신상카드 작성 제출 및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내용 >

- 신고의무 등(법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상카드 작성·제출(법 제6조제2항, 제3항)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상카드를 보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권리, 안전 및 급식 지원 상태 확인 등

- 취학 및 학대여부 등 아동상태 확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담당자 지정 등 조치)

나. 보호조치

● 아동실태 파악자료를 활용하여 연고자를 파악→ 귀가 조치

-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보장 전산망을 이용한 부양의무자 확인 및 부양능력 파악
- 아동 및 보호자 개별면담 실시
- 연고자가 부양능력 등이 있는 경우 상담 등을 통해 가정으로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가정형편(이혼, 질병 등)으로 귀가조치가 곤란한 아동은 가정 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를 우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근 및 연고지 시설로 전원조치

- 시설 전원조치 시,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내로 전원조치하되, 동일 시·군·구내 시설 부족으로 전원이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구의 인접 시설을 소개하고 생활자 및 보호자가 선택(시·도 차원에서 조정)
- 동일 시·도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내 법인시설의 정원을 일시적으로 초과 하더라도 보호

4. 행정사항

● 미신고시설 발생 방지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과정에서 미신고시설 발생 가능성을 수시 확인하고, 지역사회 복지 시설(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정보수집 및 기초행정망(통·반장, 부녀회 등)을 적극 활용

※ 지자체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제공

- 행정전산망을 통해 미신고발생 가능성 확인(동일주소지 수급자 여러명 등록 등)
- 미신고시설 발생 징후 포착시 바로 현장확인 및 아동(관계자) 상담(면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근원을 차단

● 시설장이 자발적으로 생활자를 전원조치 하는 경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여유시설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

※ 기존의 인근시설 등의 수용능력 파악

● 신고전환을 추진중이거나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설은 추진상황 및 신고일정 등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

● 신고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이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 자진폐쇄키로 한 시설 등은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조치를 실시,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

- 시설장 및 생활자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전원이 무리없이 이뤄지도록 조치
- 인권침해시설,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 인권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지역언론, 시민 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조성한 후 시설장 고발 및 전원조치 실시

● 각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개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파악·관리

- 점검결과 아동학대, 회계부정 등이 발견 된 경우에는 가능한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 등을 실시
-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미신고 및 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서식 4, 5호)에 따라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함